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7 - 13 - 079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 결 일 2017. 3. 15.

주 문

1.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 '필수동의 항목'과 해당 개인정보 없이도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선택동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선택동의 항목'은 개별적으로 동의 받도록 구성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선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선택동의 항목'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가 '선택동의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굵은 글씨, 빨간색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격증 응시 등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 일반 현황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평 균
매출액(단위 : 백만원)				
상시 종업원 수	-	-		

※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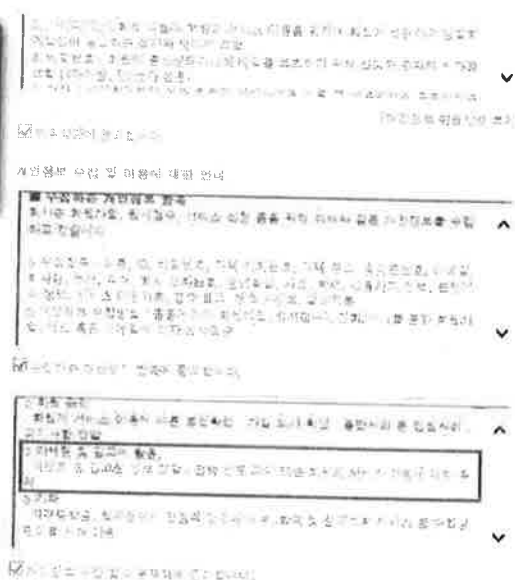
행정자치부는 피심인에 대한 민원제기(2015.2.12.)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2015.3.31.)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2016.9.13.)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사실

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3항)

1)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국가공인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2급 등 자격증 시험안내, 시험접수, 합격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4. 6. 이전에는 회원 가입시 '이름, 자택전화번호, 자택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등'의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음에 있어,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 '필수동의 항목'과 해당 개인정보 없이도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선택동의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아, '선택동의 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구성하지 않았으며, 이용자가 그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선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지 않았다.



2) 그리고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 수행과 관련 없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웹사이트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였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1.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7. 1. 12. 의견을 제출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 최소 수집·보관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2014.11.12.)은 해당 개인정보 없이도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동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개별적으로 동의 받도록 구성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선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선택동의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굵은 글씨, 빨간색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보호 규정 안내서」(2015.2.)에서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예시)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의 구분

구분	필수동의 항목	선택동의 항목
예 시	① 인터넷 회원제 서비스 · (본질적 기능) 회원 식별정보 · (예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법정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① 인터넷 회원제 서비스 · (선택적 기능) <u>상품 마케팅</u> · (예시) 마케팅 목적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자격증 시험의 안내 및 등록 등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항목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심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 '필수동의 항목'과 해당 개인정보 없이도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선택동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선택동의 항목'은 개별적으로 동의 받도록 구성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선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선택동의 항목'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가 '선택동의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굵은 글씨, 빨간색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3항 위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 9]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을 명확히 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2014.11.12.)」에서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및 행정처분 일정을 2015년 4월로 안내한 점과 2015. 3. 31.에 있었던 관련 조사 이후 피심인이 곧바로 2015. 4. 6. 위반사항을 시정완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V.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장 최 성 준 (인)

부위원장 김 재 홍 (인)

위원 김 석 진 (인)

※ 공무상 국외 출장('17.3.13.~3.16. EU, 벨기에)으로 전체위원회 불참

위원 이 기 주 (인)

위원 고 삼 석 (인)